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실태조사 결과 반영 등 >

■ 김운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65호)

202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윤덕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2024. 7. 8.

다. 회 부 일: 2024.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가수·연기자와 연습생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K-POP, 트로트 음악, 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식비·교통비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음. 일반인 출연자 뿐만 아니라 영화·드라마 등의 보조출연자의 열악한 처우 역시 계속하여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등 대중문화예술용역 현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을 제·개정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의 항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생략) <u><신설></u>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u>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u>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실태조사) ① ----- ----- ----- ----- <u>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 제18조¹⁾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또한, 제8조³⁾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등에게 보급하도록 하고,⁴⁾ 이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방송 등 실제 촬영현장에서 출연자·보조출연자 및 스태프 등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

-
-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기획업·제작업) 모집단 대상 전수조사(응답률 70% 이상) 및 종사자(대중문화예술인·제작스태프) 대상 표본조사(예술인 1,000명, 스태프 500명 이상)와 함께 전문가 자문,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각종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내용에는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계약 및 4대보험 가입 현황,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대상 고용·계약현황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는 총 17건으로, 대표적으로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2019. 9. 29. 시행),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2018. 11. 28. 시행),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2021. 9. 30. 시행),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2021. 10. 27. 시행) 등이 있음.

우가 지속적으로 문제되면서,⁵⁾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현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더욱 내실화하고 표준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법적 장치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사항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추가하고, 대중문화예술 표준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실태조사의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용역이 수행되는 현장에서의 불공정 계약 등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계약서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정확한 실태를 적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촬영현장 및 종사자 등 처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아울러,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의결한 바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⁶⁾

문 의 처
02)6788-5376

5) 뉴스토마토, “방송스태프 처우 개선 9개월째 ‘지지부진’”, 2024. 3. 28.

6) 개정안과 동일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2023. 4. 21. 의결하였으나, 해당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